

교정학 객관식(추록)

p.144 문06

체포된 자를 말한다. →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p.146 문02.. 지문③,④ 수정

③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④ 긴급체포된 사람도 →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p.147 문02.. 해설 수정

사람은 ‘그 밖에 법률과 → 사람은 ‘법률과

(형집행법 제2조 제4호) → (형집행법 제2조 제1호)

p.152

문01.. 지문②,④ 수정 그리고 해설 도표 교체, 또 음영박스 안의 제목 수정

② 집행을 받은 사람을 →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④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도표 교체(제목은 그대로)

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수형자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미결수용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사형확정자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음영박스 안의 제목 수정
그 밖의 법률과 → 법률과

p.159 문01

전염병에 → 감염병에

p.161 문01..

해설.. 음영박스.. 고딕체로 된 제목.. 3번째 제목 수정
수용사실의 통보 → 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p.213 문05.. 해설④ 수정

소장은 감염의 우려가 →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에 →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p.219 문05.. 띄어쓰기 및 오타 수정

주고 받는 서신에 → 주고받는 서신은

p.235 문04 해설 ①,③ 수정

- ① 수용자간 서신은 → 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은
- ③ 보내려는 경우에는 → 보내려는 경우로서

p.236 문05 해설②.. 다음으로 교체

- ②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 간의 서신은 허가(동법 제43조 제2항)와 검열(동법 제43조 제4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의 대상 및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은 일정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열대상이 된다.

2_ 교정학 객관식 추록

p.251 문07 해설㉔.. 다음으로 교체

- ㉔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 간의 서신은 허가(동법 제43조 제2항)와 검열(동법 제43조 제4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의 대상 및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은 일정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열대상이 된다.

p.372 문13.. 문제 교체 및 지문①,② 교체 및 해설①,② 교체

13 수용처우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한 조항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②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한 조항은 수용자의 증거인멸의 가능성 및 추가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①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한 조항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11.24. 2014헌바401).
- ② 헌재 2016.11.24. 2014헌바401

p.373 문14.. 다음으로 교체, 정답은 그대로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하며,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②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부터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 ③ 일정한 사유가 있어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Ⅱ 징벌의 집행 Ⅱ (형집행법 제112조)

-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③ 30일 이내의 금치(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제4호)부터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행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치(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소장은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제13호) 또는 30일 이내의 금치(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p.374 문15.. 해설③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③ 동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6.5.26. 2014헌마45)의 취지 및 법 제112조 제3항과 제4항의 개정(2016.12.2)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라 판단되고,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p.377 문21 지문⑤ 수정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없다.

→ 집필·서신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없다.

p.378 문22.. 다음으로 교체, 정답은 ④(즉 ②→④)

22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설..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형집행법 제112조 제4항).

p.396 문11 해설.. 밑에서 2번째 줄

2020년 2월이 정기재심사의 → 2020년 2월이 두 번째 정기재심사의

p.429 문35 지문 마.와 해설 마. 다음으로 교체

마.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6.5.26. 2014헌마45).

p.439 문05 해설④.. 오타 수정

교화상답, ⑤ 그 밖에 → 교화상답, 그 밖에

p.486 문01 해설.. 3번째 줄.. 추가

대하여는 제84조 → 대하여는 제82조(사복착용), 제84조

p.494 문02.. 지문㉠, 해설㉠ 수정

지문㉠ :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하고, →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고,

해설㉠ :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형집행법 제2조 제2항). →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형집행법 제2조 제3호).

p.497 문05.. 지문㉡, 해설㉡

지문㉡ : 서신수수에 등에 있어서 → 서신수수 등에 있어서

해설㉡ : 대하여는 동법 제84조 → 대하여는 동법 제82조(사복착용), 제84조

p.500 문10 해설㉠

형집행법 제87조에 따라 → 형집행법 제87조(경찰서 유치장의 미결수용실 준용)에 따라

p.502 문12 해설㉣

수형자는 법 제84조 → 수형자는 법 제82조(사복착용), 제84조

p.595 문04 해설.. 도표.. 다음을 추가

보호관찰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	사회봉사·수감명령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형법	㉢ 소년법
㉣ 소년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p.673 문10 지문 마. 다음으로 교체

마.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의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p.680 문26.. 문제 교체 및 지문①,② 교체

26 수용처우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한 조항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②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한 조항은 수용자의 증거인멸의 가능성 및 추가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p.682 문30 지문④ 다음으로 교체

- ④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p.686 해설10. 해설 마. 다음으로 교체

마.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6.5.26. 2014헌마45).

p.690 해설26. 해설①,② 다음으로 교체

- ①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한 조항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11.24. 2014헌바401).
- ② 헌재 2016.11.24. 2014헌바401

p.692 해설30. 해설④ 다음으로 교체

- ④ 헌재 2016.4.28. 2015헌마243